

# 배달비 부담 누가?... 고객·점포주·라이더 ‘삼차방정식’

## 배달에 올고웃는 자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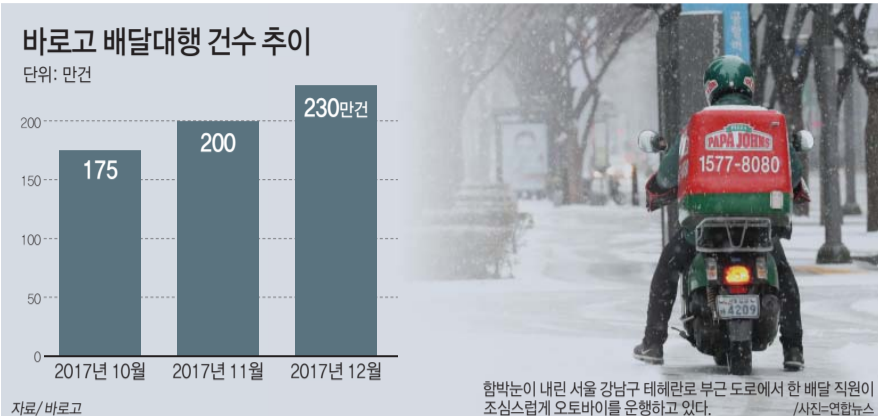
〈下〉 자영업자 vs 배달대행

배달 대행료 매년 올라 4200원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하소연  
배달비 부담하면 소비자들 불만

“자영업자 위한 공익기능 생각을”

#. 경기도 시흥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부부는 올해부터 배달비를 고객과 분담하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커피 등을 제조해 남편이 배달을 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주문이 늘면서 배달하는데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부는 아직까지도 고민이 깊다. 고객들이 최소 주문금액에 배달비까지 분담해야 하나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먹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배달기사(라이더)를 통해 소비자 집에 음식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는 배달대행서비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주문이 많은 시간에 애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했던 배달대행 서비스가 요즘 자영업자에게 애증의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배달대행료와 배달비 부담을 꺼려하는 고객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자체 배달대행 서비스(배민라이더스)의 월 평균 주문량은 지난해 5월 기준 40만건으로 2016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다. O2O 배달대행 전문업체인 ‘바로고’의 거래액도 지난 2017년 기준

4500억원으로 라이더의 월 평균 배달대행 건수는 200만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대비 73%나 급증한 셈이다. 배달대행업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배달대행 서비스가 확대된 이유는 정규직 배달기사를 직접 고용해 4대보험 의무 등을 지는 것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배달대행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별도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배달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도 직고용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만 주면 돼 비용을 절

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아만 가는 배달대행료...

그러나 요즘 자영업자들은 배달대행 서비스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배달대행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면서 자영업자에게 부담이다. 마포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김 모씨(55)는 “배달대행을 부르면 가게근처 기준으로 1.5km에 4200원의 배달료가 붙는다”면서 “1.5km가 넘어가면 500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고, 비나 눈이 오면 500원의 수수료가 따로 붙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32)도 “매년 100원~300원씩 오르면 배달료가 벌써 3800원(1.5km)으로 뛰어 올랐다”고 말했다. 배달대행료는 지난 2016년 1.5km 기준 3000원에서 2017년 3500원, 올해는 100원~300원이 올라 3800원을 기록했다.

반면 배달대행업체는 인건비 상승여파에 관리비도 상승하고 있어 수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배달대행업체를 선호하는 배달인력이 늘면서 직접 고용도 어려워졌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배달대행 서비스를 안쓸수도, 비용

을 낮출 수도 없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배달대행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배달비 부담을 꺼려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7일 기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배달비나 최소 주문금액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결과 배달비와 최소 주문금액 모두를 요구하는 업주들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졌다.

박모씨는 “고객들 중에는 전화로 재료 뒤돌아가냐고 묻다 마지막에 배달비가 추가된다고 하니 망설임이 끊은 경우도 있다”면서 “최소 주문금액이라는 게 가게의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금액이기 때문에 배달대행료를 가게에서 다 부담하게 되면 가게는 남는 게 정말 없다”고 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앱 시장관련 세미나에서 “배달앱과 배달대행업 모두 자영업자의 돈과 노력으로 구축한 생태계 망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 즉, 자영업자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

산업부, 중견기업법 개정안 7월 시행  
주식교환·합병 등 추진 절차 간소화

사업 영역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전환이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장 중견기업이 업종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 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사업전환 특례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현재 합병은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중견기업 법은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을 위해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자기주식 취득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이 교환하고자 하는 주식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합병이나 영업양수도를 이행할 때 채권자 이익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서도 상법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이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으려는 중견기업은 사업전환 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산업부는 이 법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활력법과 달리 기업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간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 등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대상 중견기업의 규모와 사업 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7월 초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손진영 기자 son@

## 與野 5당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 한목소리

###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

최승재 회장 “올 법 제정 원년 될 것  
대법원에 최저임금 실질심사 청구”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들이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19년은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논의하는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추천한 인물로 전문가들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폐지해야 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한데 이어 “대법원에 실질심사 청구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신년 하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 대표들이 두루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장과 5당대표 월례모임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

겠다”며 “소상공인이 많은 나라인데 기본법도 계획도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대표도 “소상공인 기본법은 자유한국당이 제일 먼저 발의했다”며 “노동시간 제한, 주휴수당에 대한 걱정이 많아 보이는데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위안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주요 당 대표들이 관련법 통과를 약속하면서 올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동안 관련 업계가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기도 하다.

1960년대 만들어진 중소기업기본법이 있지만 정부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끼워넣기식’으로 치부돼왔고, 사회적 인식도 낮은 등 늘두리를 맴돌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양극화·경제 불균형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지원·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지원이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단기적으로 계속 지원만하고 응급처방만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처한 환경은 척박한데 지원만 해줘선 효과를 못 본다.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물 속

에서 사업 해 중소기업 등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생태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30% 가깝게 오른 최저임금을 두고도 할 말이 많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면서 전문가(공익위원)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민하고 있다.

최 회장은 “구간설정위원회는 누가 추천되더라도 과거 이력과 성향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주휴수당을 우선적으로 폐지해 이미 오를대로 오른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조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현재 주고 있는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 이미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견해다. 한마디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도 문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의견을 경청한 만큼 소상공인들도 꼭 초청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소상공인업계는 반정부단체가 아니다. 합리적인 경제단체로 발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기재부,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해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도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

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그동안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개정안은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회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주었다. /연합뉴스